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관세총국의 제 18/2021/ND-CP 호 시행령("제18호 시행령")을 실행에 대한 제 2687/TCHQ-TXNK 호 OL("제2687호 OL")

2021년 6월 11일



배경

- 2021년 3월 11일에 정부는 수출입세법에 관한 제134/2016/ND-CP호 시행령 ("제134호 시행령")을 보완하는, 2021년 4월 25일 에 발효된 "제18호 시행령"을 공표하였습니다.
- 본 시행령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관계로, 이에 관세총국에서는 제18호 시행령 실행에 대한 제2687호 OL를 발행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

1. 수출가공 및 수출제조 활동에 대한 지침
2. 수출가공기업("EPE") 에 대한 세관감사, 감리 조건에 대한 제28a조 실행을 위한 지침
3. 내륙 수출입 활동에 관한 주목할 만한 내용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관세 총국의 제 18/2021/ND-CP 호 시행령("제 18호 시행령")을 실행에 대한 제 2687/TCHQ-TXNK 호 OL("제 2687호 OL")

2021년 6월 11일



1. 수출가공 및 수출제조 활동에 대한 지침

#	구분	수출가공	수출제조
1.1	국내기업으로 재가공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세가 부과되는 국산 원자재로 가공되는 완제품은 해당 자재에 대한 가치 및 관세율을 기준으로 수출시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임가공계약 당사자들은 국내기업(EPE 또는 비관세 구역 내 기업이 아님)의 경우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무부에 의한 규정(이하 "MOF")에 따라 원자재·물자·제품·기계·장비 납품 관련 지원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가공위탁 당사자는 원자재 및 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가공계약서, 부록 및 가공업체에 대해 관세당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기도 하다. 	<p>납세자 (가공위탁자)가 가공.제조업체,가공.제조 계약서에 대해 관세당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p>
1.2	비관세구역 또는 해외기업으로 재가공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품 또는 수입 자재로 가공된 반제품은, 위탁 가공을 위해 EPE 또는 해외 기업에 인도될 때, 수출 관세가 면제된다. EPE 또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가공된 제품은 베트남에 다시 수입되면 수입 관세가 부과된다. 	

1. 수출가공 및 수출제조 활동에 대한 지침(계속)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관세 총국의 제 18/2021/ND-CP 호 시행령("제 18호 시행령")을 실행에 대한 제 2687/TCHQ-TXNK 호 OL("제 2687호 OL")

2021년 6월 11일



#	구분	수출가공	수출제조
1.3	내륙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신고서의 통관일로부터 15일 내에 수출자가 완료한 수입 신고서에 대해 우편으로 관세당국에 통지하거나, 혹은 수출 신고서가 등록된 관세지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V5"라는 시스템(관세 시스템 이 기능을 업데이트됨) 통지서의 스캔본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자가 수입 신고서를 15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내륙 수출입 물품 생산을 위한 수입 자재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할 목적으로 신규 관세신고서 (A42 수입모드로)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신규 신고서를 등록 시점에 해당 수입 자재의 관세율 및 가치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수출자가 신규 관세신고서 (A42 수입모드로)를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한 다음에 수입 신고서의 관세 신고 절차완료를 통지하는 경우 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금 부과가 고지 된 경우, 관세당국은 조세관리 법령에 따라 과납부세액을 처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세가 부과되는, 국산 자재로 가공된 내륙 수출 완제품은 수출시 해당 자재의 가치와 관세율을 기준으로 수출세가 부과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륙 수출 물품은 수출세 (EPE 또는 비관세구역의 업체에서 수출 물품)가 부과된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1. 수출가공 및 수출제조 활동에 대한 지침(계속)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관세총국의 제 18/2021/ND-CP 호 시행령("제 18호 시행령")을 실행에 대한 제 2687/TCHQ-TXNK 호 OL("제 2687호 OL")

2021년 6월 11일



#	구분	수출가공	수출제조
1.4	내륙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륙 수입품은 수입 관세신고서가 수출가공 모드로 등록되면 수입세가 면제된다. 내륙 수입품이 (수출가공 모드가 아닌) 무역 모드(A11) 또는 제조 모드(A12) 와 같은 수입 모드로 등록된 경우, 수입자는 수입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수입세가 납부된 내륙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해외 또는 비관세구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었으며, 실제로 해당 완제품이 수출 될 경우에만 납부한 수입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1.5	폐품 및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공과정에서 생긴 폐품 및 폐기물은 수입세가 면제된다. 가공과정에서 생긴 폐품 및 폐기물은 국내 시장에 판매될 경우 수입세가 면제되며, 납세자가 세관 수속을 수행할 필요가 없지만, 부가가치세("VAT"), 소비세, 환경보호세(있는 경우)를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가공과정에서 생긴 폐품 및 폐기물이 2021년 4월 25일 이전에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경우 납세자는 관세총국의 2019년 5월 22일 5845/BTC-TCHQ OL, 2019년 7월 1일 4344/TCHQ-TXNK OL에 따라 세무당국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제조 과정에서 생긴 폐품 및 폐기물은 수입세가 면제된다. 수출 제조과정에서 생긴 폐품 및 폐기물은 국내 시장에 판매될 경우 수입세가 면제되며, 납세자가 세관 수속을 수행할 필요가 없지만, 부가가치세("VAT"), 소비세, 환경보호세(있는 경우)를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수출제조 과정에서 생기된 폐품 및 폐기물이 2021년 4월 25일 이전에 국내 시장에 판매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관세당국에 부가가치세("VAT")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관세총국의 제 18/2021/ND-CP 호 시행령("제 18호 시행령")을 실행에 대한 제 2687/TCHQ-TXNK 호 OL("제 2687호 OL")

2021년 6월 11일



2. 수출가공기업("EPE")에 대한 세관감사, 감리 조건에 대한 제28a조 실행을 위한 지침

비관세구역인 수출가공기업("EPE")에 대한 세관감사, 감리 조건에 대한 제28a조

2.1. 세관감사, 감리에 관한 조건

EPE를 관리한 관세지국은 투자유관기관에 의해 발급한 요청 문서를 받아 해당 EPE의 세관감사, 감리에 관한 조건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 및 인증을 수행한다.

관세지국은 제18호 시행령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세관감사, 감리 통과 인증 (프로젝스 반복 될 수 있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신규 / 확대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EPE는 관세당국에 세관 검사, 감리에 관한 조건을 충족했다고 **통지했지만**, 관세당국에 의한 심사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
- 투자허가서 ("IRC"), 수정된 투자허가서가 부여된 EPE, **또한** 2021년 4월 25일 이전 투자허가서 필요 없는 경우 투자유관기관에 의해 발급한 문서를 보유하며, **운영 중인 EPE, 혹은** 2021년 4월 25일 이전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감사, 심사 통과 인증이 부여된 EPE
- 투자허가서 ("IRC"), 수정된 투자허가서가 부여된 EPE, **또한** 2021년 4월 25일 이전 투자허가서 필요 없는 경우 투자유관기관에 의해 발급한 문서를 보유하며, **건설 중인 EPE, 혹은** 2021년 4월 25일 이전 관세당국으로부터 세관감사, 심사 통과 인증이 부여된 EPE

EPE 및 관세당국은 제18호 시행령의 VII 부록에 첨부된 제25호 및 제26호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통지를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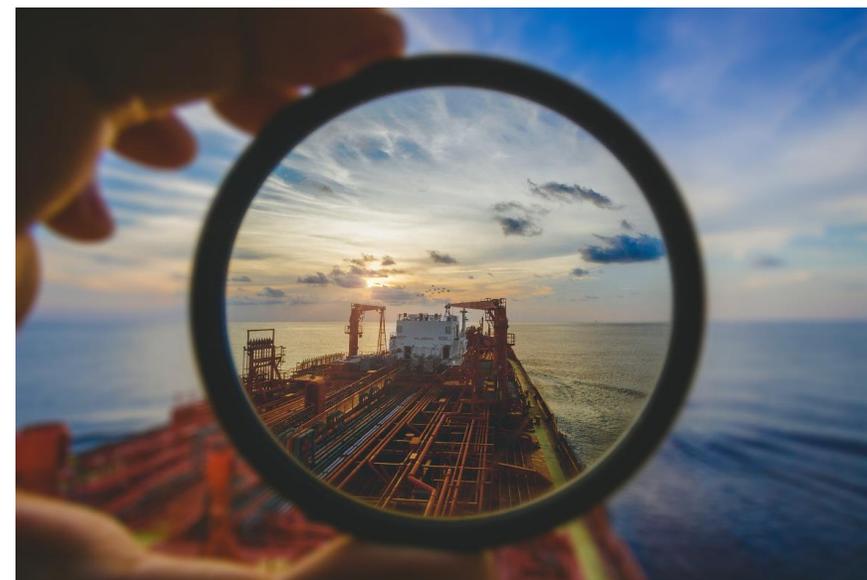
2.2. 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창고, 원자재, 완제품, 반제품, 기계, 장비 및 기타 과세되지 않은 **물품 보관소**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공장, 사무실, 그리고 사내 식당과 같은 생산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데에 CCTV 설치가 필요 없다.

2.3. 과세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관리 소프트웨어

관세총국은 제38/2015/TT-BTC호 시행규칙 ("제38호 시행규칙") 제60.2b조 보완을 위한 제39/2018/TT-BTC호 시행규칙 제39.1조에 따라, 세관당국 보고 목적으로 면세 수입 원자재 및 해당 원자재로 제조된 수출품에 대한 입고 - 출고 - 잔고 상태 관리 소프트웨어를 EPE 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다.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뉴스

관세 총국의 제 18/2021/ND-CP 호 시행령("제 18호 시행령")을 실행에 대한 제 2687/TCHQ-TXNK 호 OL("제 2687호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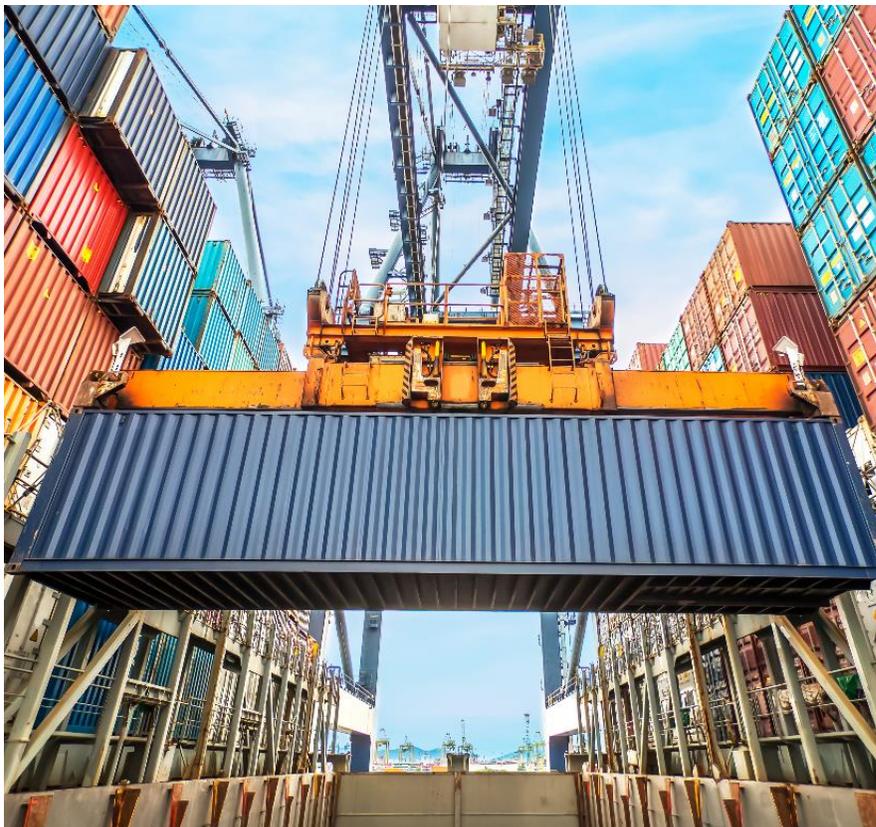
2021년 6월 11일



3. 내륙 수출입 활동에 관한 주목할 만한 내용

3.1. 수출자는 지정 배송 문서가 있어야 내륙 수출업체로 인정될 수 있다.

수출자는 현지 수출 절차를 수행할 때 해외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베트남으로의 지정 배송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내륙 수출 활동으로 간주될 수 없다.



3.2. 관세당국은 수출가공, 수출제조 업무에 관한 내륙 수입신고를 감독한다.

관세지국은 아래 사항을 진행해야 한다:

- Ecustoms-V5 시스템의 "I. 중앙 집중식 데이터 채집"기능 및 "H. 내륙 수입신고서/1. 15일 연체 신고 모니터링"기능을 통하여 내륙 수출입 관세 신고서 목록을 통합.
- 상기 2개의 기능을 통하여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내륙 수입 신고서가 없는 지연된 내륙 수출 신고서를 식별함.
- 관세 신고서에 있는 " 기업 내부 관리 항목 " 에 올바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

(Note: 이 지침은 2021년 6월 3일 제 2736/TCHQ-TXNK호 OL에 의해 보완되었음):

- 내륙 수출 신고서: "#&XKTC"
- 내륙 수입 신고서: "#&NKTC# 내륙 수출 신고서의 번호 (11 자리)"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Kim Min Je
KSG Manager
+84 90 218 5562
mkim21@deloitte.com



Park Eun Sil
Tax Manager
+84 90 220 4587
eunsipark@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Making an impact since 1991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